

# 북양트롤선 DIKO호 사건과 미국의 재판절차 고찰

The U.S. Court Trial of the F/V “DIKO”

김민종\*  
Kim, Mean Jhong

---

〈 목 차 〉

---

- I. 서론
  - II. 사건의 내용
  - III. 재판절차 고찰
  - IV. 주요 쟁점
  - V. 결론
- 

**Abstract** :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itiated an Agreement on Fisheries Cooperation in 1972, which was extended twice afterwards. The agreement greatly contributed to the promotion of sanitary shellfish farming and salmon resource stocking in Korea.

The second and the third phase of the agreement, beginning in 1977 and 1982, respectively, contributed to bilateral fisheries trade promotion and also to the progress in Korea's deep-sea fisheries, especially the northern trawl fishery through the Alaskan pollock quota allocation to Korean fishing vessels. However, following the decision of the US government to terminate further quota allocation to Korean fishers, the Korean fishing fleet withdrew from the EEZ of the US, ultimately, the agreement was terminated as of 31 Dec. 1995.

During the period the agreement was in effect, there had been frequent fishery disputes between Korean fishing companies and the US authorities. Unfortunately, there is no available study on these cases nor proper references. This paper tried to conduct a thorough review of the

---

\* 한국수산물부회장(전 한국원양어업협회 상근 부회장).

case of the trial of the case of F/V “DIKO”, which was about the violation of a US-Russia Maritime Boundary and subsequent arrest of the vessel, a Korean northern trawler “DIKO”(4,052GT) on 24 Sep. 2000. The contents include the proceedings of the whole case, i.e., the arrest of the vessel, prosecution, agreement between the prosecutor and the defendant, stipulated settlement agreement ruled by the District court of Alaska and the order of release.

This paper focused on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incident such as the nature of the US-Russia maritime boundary line,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hot pursuit by the USCG, and the release of vessel and the crew.

In conclusion, under the current UNCLOS system, the coastal states exercise sovereign rights for the regulation of fishing in their EEZ; those Korean fishing companies with a weak financial structure cannot help but accept the court’s decision (of the coastal state) or accept the stipulated settlement agreement in order to avoid incurring further lawsuit costs.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Korean northern trawlers fishing in Russian waters, including J/V trawlers which are exposed to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maritime boundary, establish preventive measures and implement them so that they do not become involved in unnecessary lawsuits.

**Keywords** : maritime boundary line, right of hot pursuit, UNCLOS, EEZ

## I. 서 론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미합중국(이하 미국) 간의 어업에 관한 상호 협력의 역사는, 1972년 11월 24일 미국의 워싱턴에서 서명<sup>1)</sup>되고, 1972년 12월 12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제1차 한·미 어업협정)’<sup>2)</sup>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협정에서 미국은 한국의 위생적인 패류양식에 관하여 자문함과 동시에 북태평양에서 한국 원양어선들에 의한 미국(일본, 캐나다)기원의 연어어획을 사전에 금지시킬 목적으로 자국의 연어(Coho : Silver Salmon) 수정란을 한국에 제공하여 한국근해에서의 연어자원을 조성토록 협력하였다.<sup>3)</sup> 한편, 미국은 당시 3해리 영해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영해 밖 9해리 이내에서도 특정수역에서는 한국어선의 자유로운 적재행위를 제한하였다.<sup>4)</sup> 이 협정은 1977년 3월 3일 종료되었으나, 한국패류양식의 위생수준을 미국의 FDA<sup>5)</sup>기준으로까지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여 한국의 냉동굴 수출실적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아직까지도 실적은 미미하나, 한국기원의 연어치어 방류사업 기술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하겠다. 그러나 특기할 사항은 이 협정 제8조에 이 협정의 어느 규정도 상호 공해어업의 자유에 관한 일방정부의 견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후 1977년 미국이 200해리 어업보존수역(Fisheries Conservation Zone)을 선포함에 따라 1977년 1월 4일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제2

1)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김동조, 미합중국 국무장관 도널드 엘 맥커넨(제1차 한·미 어업협정).

2)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ooperation in Fisheries(조약 448호).

3) 한·미 어업 협정 제2조(a)(b)(제1차).

4) 한·미 어업협정 제3조(제1차).

5) 미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차 한·미 어업협정)에 서명하였고, 이는 1977년 3월 3일 발효되었다.<sup>6)</sup> 1972년의 협정이 상호주의를 표방한 협정이라면, 1977년 협정은 협정명칭에서 보듯이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미국의 200해리 어업 보존 구역 성격에 맞추어 200해리 내에서 어업자원에 관한 관할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형식적인 상호주의 형식의 협정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sup>7)</sup> 이 협정 제3조 2항은 1982년에 채택된 유엔 해양법 협약(이하 해양법협약) 제62조 2항의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즉, MSY가 가능하도록 과학적 증거자료에 입각한 총허용어획량(TAC) 결정과 미국어선이 어획할 능력<sup>8)</sup>을 제외한 잉여량 중 한국에 대한 쿼터할당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협정 제4조는 잉여량을 배분함에 있어 관습적인 조업실적(habitually fished)과 경제적 혼란의 극소화(minimize economic dislocation)를 배분시의 고려요소로 규정하고 있어 해양법 협약 제62조 3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업분쟁에 관하여는, 한·미 어업 협정 제9조 1항에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미국 단속공무원의 임검행위에 적극 협력할 것과, 나포한 경우에는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9)</sup> 또한, 어선과 선원의 나포로 인하여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은 합리적인 보증금(reasonable bond) 또는 기타 보증물(other security)의 예치 후, 어선과 선원을 신속히 석방함으로써 경제적인 손실이 극소화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역시 해양법 협약 제73조 2항과 같다고 하겠다. 이 협정 역시 1983년 4월 28일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폐기되었다.

1982년 7월 26일 워싱턴에서 서명되고, 1983년 4월 28일 발효<sup>10)</sup>된 ‘한·미 어업협정(제3차 한·미 어업협정)’은 미국이 요구하는 무역질서

---

6)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Fisheries on the Coasts of the United States.

7) 한·미 어업협정 전문, 제1조, 제13조(제2차).

8) 미국의 지역위원회(RC ; Regional Council)는 후에 이를 DAH(Domestic Annual Harvest)라고 표현하였다.

9) 한·미 어업협정 제9조 2항(제2차).

10) 조약 811호.

와 어업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다. 즉, 잉어량을 할당하는 기준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미국의 어류 또는 수산물 수입에 대해 관세장벽 혹은 비관세 장벽(tariff barriers or non-tariff barriers)을 두거나 시장진출 제한 여부와 정도를 가장 주요한 요소로 하고, 미국 어민들로부터 어류 또는 수산물을 매입함으로써 미국과의 협력정도도 고려토록 했다.<sup>11)</sup>

또한, 그 동안의 정부 간 쿼터할당량을 매년 감소시키고, 반면 미국 기업과의 교역 및 합작투자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미국의 수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sup>12)</sup> 이 협정은 1982년 해양법 협약이 채택된 후 발효되었으므로,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의 결과에 의한 다자조약 체결시 양국 정부가 재검토토록 규정하였다.<sup>13)</sup> 이 협정은 1987년 7월 1일에 종료되고, 1993년까지 4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운영되다가 1987년 이후 정부 간 어획쿼터의 할당이 중지된 상황 하에서 한국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결과로 협정의 틀이 남게 되었으므로 1995년 12월 31일 한·미 어업협정의 효력은 완전 종료되었다. 이후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해상 경계선상에 위치한 베링 공해에 대한 자원관리를 위하여 “중부 베링 해명태자원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이라는 6개국<sup>14)</sup>이 참여<sup>14)</sup>하는 다자협정으로 대체되어, 1994년 6월 16일 워싱턴에서 서명되고 1995년 12월 8일 발효<sup>15)</sup>된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은 세 번(1972년, 1977년 및 1982년)에 걸쳐 협정의 틀을 바꾸면서 어업분야에서 협력하여 왔으며, 특히 2-3차 협정이 운영되는 기간에 미국수역에서 한국어선의 여러 가지 유형의 분쟁사태가 있었으나, 선행연구가 미흡하고, 현재 자료보관마저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러시아 수역에서 쿼터조업을 하다가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여 어선과 선원이 나포되고, 재판받은 바 있는 DIKO호 사례를 통하여 미국의 어업분쟁에 관한 재판절차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11) 한·미 어업협정 제4조 각항(제3차).

12) 한·미 어업협정 제5조(제3차).

13) 한·미 어업 협정 제16조 2항(제3차).

14)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폴란드, 중국.

15) 한국은 1996년 1월 4일 발효.

## II. 사건의 내용

###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2000년 9월 24일 (현지시간 06:40, 미국은 9월 23일) L산업 소속 북양트롤어선 'DIKO'호(4,050톤급)가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북위 61° 17', 서경 177° 44' 3 지점에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명태쿼터(2,000톤)를 소진하기 위하여 예망 중, 북위 61° 18' 85, 서경 177° 44' 32 지점에서 미국 해안경비대(USCG) 소속 정찰기로부터 현재 예망 중인 지점이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임을 통보받고 즉시 양망한 후 북위 61° 42', 서경 178° 01' 8 지점에서 러시아 국경수비대 소속 경비정인 'Askol Pynko'호와 접촉하여 본선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바, 본선의 위치는 러·미 해양분할경계선(이하 경계선)<sup>16)</sup>상의 러시아측 수역이기는 하나, 러시아 정부 규정인 1.5해리 접근금지를 위반하였다하여, 15,380US달러의 벌금납부에 동의한 후 현장을 이탈하려는 시점에서 9월 24일 16시 30분 USCG 'Jarvis 725'호의 무장요원의 재검색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본선이 USCG 정찰기의 통보를 받은 지점이 러·미 경계선을 월선한 지점임을 통고한 후, 'DIKO'호에 승선 중인 러시아 감독관과 러시아 국경수비대 감독관을 하선시키고, 9월 25일 12시 10분경 북위 61° 47' 5, 서경 177° 32' 1 지점에서 'DIKO'호를 나포하여 알래스카주의 더치하버로 어선과 선원이 강제 예인된 사건이다.

### 2. 사건의 배경

한국의 북양트롤어선(30척, 1,000~5,500톤급)은 1991년 9월 16일 모스크바에서 서명되고, 1991년 10월 22일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소비에'

---

16) 1990년 1월 6일 베링 해 해상공간의 분할선에 관한 미·소협정(US-RUSSIA CONVENTION LINE)으로 러시아 당국은 본 분할선으로부터 1.5해리 밖에서 조업하도록 허가하고 있다(Maritime Boundary Line : MBL이라고도 함).

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정부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전문, 15개조)<sup>17)</sup> (이하 한·러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러시아 정부로부터 북서 베링 해에서의 명태 어획쿼터를 할당받아 조업하여 왔다. 사건 발생 당시 L산업 소속 'DIKO'호 역시 북서부 베링 해에서 조업 중이었으며, 러시아 정부의 허가 조건인 러·미 해양분할경계선으로부터 1.5해리<sup>18)</sup> 내의 러시아 수역에 한정된 조업이라는 허가사항을 위반하고, 경계선에 근접하여 조업하다가 월선하여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게 되었고, USCG 정찰기에 의하여 적발된 후 USCG 'Jarvis 725'호 경비정에 의하여 추적되어 러시아 수역에서 나포되었다. USCG는 1987년 자국 수역에서 한국, 일본, 폴란드 등 제3국 어선이 전부 축출된 후 이들 선박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게 되자 이들의 조업 동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으며, 러시아 정부가 러·미 경계선 1.5해리까지 조업범위를 완화하여 주자 더욱 감시를 강화하게 되었고, 1999~2000년 기간에도 한국 및 제3국 어선에 의한 빈번한 경계선 월선사태를 적발하고 과도한 벌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 시기에 'DIKO'호가 적발되었던 것이다.

### 3. 양측의 주장

#### 1) L산업('DIKO'호 선장)의 주장

첫째, USCG 정찰기로부터 통보받을 당시의 'DIKO'호 위치는 북위 61° 18' 85, 서경 177° 44' 32로 이 지점은 경계선(MBL)으로부터 러시아측 수역의 0.1해리 지점으로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둘째, 러시아 국경수비대 경비정(Askol Pynko)으로부터의 검색결과도 1.5해리 규정만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15,380US달러의 벌금 납부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17) 1992년 1월 13일 러시아 연방 외무성이 각국에 '러시아 연방'이 '구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을 국제조약상의 당사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8) 2000년 4월 26일 러시아 정부는 러·미 해양경계선 부근 조업수역 완화조치로서 1.5해리까지 조업을 허용하였다(5해리→2해리→1.5해리).

셋째, USCG 경비정 ‘Jarvis 725’호가 지적한 경계선으로부터 0.3해리 미국 수역 침범이라 함은 계기상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사실로 판명이 될 경우에도 이는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

넷째, ‘DIKO’호에 적재된 어류 약 257톤(명태 252톤, 대구 5톤)은 전량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한 것이다.

## 2) 미국측(USCG) 주장

첫째, USCG 소속 경찰기 조종사(Lt. Kevin S. Nash)는 2000년 9월 23일 한국 선적의 ‘DIKO’호를 처음 발견한 지점은 북위 61° 18′ 4, 서경 177° 44′ 8로 미국수역이며,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였기 때문에 추적이 개시되었으며, USCG 경비정 ‘Jarvis 725’호에 인계한 후 계속 추적토록 했다고 진술했다.<sup>19)</sup>

둘째, USCG 소속 ADC(Air direction controller)인 Kevin R. Leggett는 2000년 9월 23일 경찰기와 경비정 ‘Jarvis 725’호로부터 한국어선을 추적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sup>20)</sup>

셋째, USCG 소속 전투정보센터의 감독관인 Mitchell T. Gross는 2000년 9월 23일 20시 28분경 한국적 어선인 ‘DIKO’호가 북위 61° 18′ 4, 서경 177° 44′ 8 지점의 미국수역에서 침로 040도 방향으로 3 노트의 속력으로 어로 작업 중이라는 보고와 비상주파수 VHF 16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추적 중이나 응답 없이 서쪽으로 도주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sup>21)</sup>

넷째, USCG 소속 관측장교인 Michael T. Knauer는 2000년 9월 23일 MBL의 미국측 수역에서 어선을 발견하고, 이 선박이 러시아 국경수비대 소속 경비정(Askol Pynko)에 접근하는 장면과 USCG 경비정이 추적하여 검거하는 장면을 연속적으로 비디오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했

19) “Statement Concerning Hot Pursuit of the Korean Flagged Fishing Vessel ‘DIKO’”, USCG. 28. Sept., 2000.

20) “Statement Concerning the Korean Flagged Fishing Vessel ‘DIKO’”, USCG. 28. Sept. 2000.

21) “Statement of Mitchell T. Gross”, 28. Oct., 2000.

다.<sup>22)</sup>

다섯째, USCG 소속 지역 정보국장 직무대리인 Lt. Ricky M. Sharpe는 미국의 MBL 감시 임무를 띠고 항공 순찰 중 2000년 9월 23일 20시 25분경 한국어선 'DIKO'호가 미국수역에서 조업 중인 것을 발견하고 추적하였으며, 이 어선은 1999년에도 MBL을 위반한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sup>23)</sup>

여섯째, USCG 소속 비행하사관인 Mark A. Fabiano는 2000년 9월 23일 20시 27분 MBL의 미국측 수역에서 외국어선 'DIKO'호를 발견하고 GPS를 사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표시한 결과, 북위 61°18'4, 서경 177°44'8 위치임을 확인하고, 조종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 어선은 3노트의 속력으로 예망 중이었고, 이 선박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 상공을 2회에 걸쳐 선회하고 재확인하였다. 이 어선은 러시아 수역으로 향하여 추적을 시작하였으며, USCG 경비정 'Jarvis 725'호에 인계되어 러시아 수역에서 나포하였고, 다시 한번 항법장치를 점검하여 위치확인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재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24)</sup>

일곱째, USCG 소속 정찰기 부조종사인 LT. Cirraig S. Breitung은 2000년 9월 23일 20시 25분경 MBL의 미국측 수역에서 어선을 발견하고 20시 28분경 추적을 시작하였다. 'DIKO'호의 최초 발견 지점이 북위 61°18'4, 서경 177°44'8이었음이 GPS 확인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 선박은 크기가 300피트인 선미식 트롤선으로서 어구가 수중에 있었으며, 3노트로 예망 중이었다. 이후 VHF 16으로 수차 호출하였으나, 정선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어선의 200피트 상공을 비행하면서 모르스 부호 SQ2와 발광신호로 통신을 시도하였으나 응답하지 않았고, 어구를 회수한 후 330도 방향으로 10노트의 속력으로 러시아 수역으로 도주한 후 러시아

22) "Statement of AMT3 Michael Knauer, Aircrew of CG1707, Regarding the FF/V 'DIKO' Fishing inside the U.S. Exclusive Economic Zone on 23 September 2000."

23) "Statement of Lt. Ricky Sharpe, Observer on CG1707, Regarding the FF/V 'DIKO' Fishing inside the U.S. Exclusive Economic Zone on 23 september 2000".

24) "Statement of AVTI Mark Fabiano, Navigator of CG1707, Regarding the FF/V 'DIKO' Fishing inside the U.S. Exclusive Economic Zone 23 September 2000."

국경수비대 소속 경비정(Askold Pynko)과 조우한 후 두 배 모두 100야드 정도 후진하였다. 이후 USCG 경비정 'Jarvis 725'호가 현장에 도착하여 인계한 후 그곳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25)</sup>

여덟째, USCG 소속 정찰기 조종사인 Lt. Carey L. Hixson은 2000년 9월 23일 20시 27분 부조종사에게 FF/V 'DIKO'호를 추적하도록 명령하였다. 그 이유는 이 어선이 MBL을 침범하여 북위 61° 18' 4, 서경 177° 44' 8의 위치에서 어로작업 중인 것을 GPS를 통하여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이 선박은 040도 방향으로 3노트의 속력으로 예망 중이었다. 이는 4개의 통신위성으로부터 자료를 입력받아 확인하였으며, 정확히 MBL을 0.3해리 침범한 것이었다. 21시 48분 'DIKO'호는 어구를 회수한 후 330도 방향으로 10노트의 속력으로 도주하여 23시 30분 러시아 국경수비대 경비정과 조우하였다. USCG 경비정 'Jarvis 725'호가 현장에 도착하여 추적을 종료하고 인계한 후 그곳을 떠났다고 진술하였다.<sup>26)</sup>

아홉째, USCG 소속 경비정 'Jarvis 725'호 승선 감독관인 Justin M. Carter는 2000년 9월 23일 저녁, 13명의 USCG 승선팀과 3명의 러시아 국경수비대 소속 요원과 함께 'DIKO'호에 승선하였다. 'DIKO'호 선장은 MBL을 넘어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금지한 수역에서 어획한 일은 있다고 시인하였다. USCG측은 'DIKO'호의 GPS와 조업일지를 검사하였다. 검사결과, 'DIKO'호는 선박위치를 도(degrees)와 분(minutes)까지만 입력하고 초(seconds) 단위는 생략함으로써 미국의 MBL을 월선하여 허가없이 조업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진술하였다.<sup>27)</sup>

---

25) "Statement of Lt. Ciraig Breitung, Copilot of CG 1707, Regarding the FF/V 'DIKO' fishing inside the U.S. Exclusive Economic Zone on 23 September 2000".

26) "Statement of Lt. Carey Mixson, Aircraft Commander of CG 1707, Regarding the FF/V 'DIKO' Fishing inside the U.S Exclusive Economic Zone on 23 September 2000".

27) "Statement regarding Boarding of South Korea Flagged Fishing Vessel 'DIKO'", USCG. 23. Sept., 2002.

### 3) 조사결과(미국 검찰에 제출한 USCG의 종합보고서)

첫째, USCG 소속 경찰기 승무원들에 의한 진술내용을 토대로 한국선적의 'DIKO'호는 2000년 9월 23일 북위 60° 47' 0, 서경 178° 42' 1 지점에서 조업한 것이 확실하므로 미국의 「맥너슨법」 16 U.S.C. 1857(2)B를 위반하였다.

둘째, USCG 소속 경비정 조사관들에 의한 진술내용을 토대로 'DIKO'호는 2000년 9월 23일 북위 61° 18' 4, 서경 177° 44' 8 지점에서 미국의 허가없이 조업한 것이 확실하므로 미국의 「맥너슨법」 16 U.S.C. 1857(2)B를 위반하였다.

셋째, 'DIKO'호측은 전기 (1)(2)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 Ⅲ. 재판절차 고찰

### 1. 미국의 사법제도

#### 1) 개요

연방국가인 미국은 연방과 주에 각기 독립적인 법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방법원과 주법원 사이에서 재판사항에 관한 관할배분이 필요하게 된다. 연방법원은 주로 연방헌법 및 연방법 하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을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로 다른 주의 주민 사이의 민사소송에 있어 청구액이 5만달러를 초과하면 그 소송이 비록 주법에 의거한 분쟁이더라도 이 사건을 취급할 수 있다. 한편 주법원도 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연방재판제도는 3심제도로써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 아래 항소법원(Court of Appeals)과 지방법원(District Court)이 피라미드 모

양의 3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현재 지방법원은 워싱턴 D.C.와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여 전 미국에 91개가 있고, 항소법원은 12개(12 Circuits)가 있다. 미국 내의 어떤 지역이든 이 지방법원 중 하나와 항소법원 중 하나의 관할 구역에 속하게 된다.

## 2) 법원의 관할

### (1) 연방지방법원

연방지방법원이 취급하는 사건은 i) 밀수나 스파이행위 등 연방법을 위반한 형사사건, ii) 독점금지법, 특허·저작권·상표, 우편, 파산, 해사, 시민권에 관한 분쟁 등 연방법 또는 연방헌법 하에서의 민사소송, iii) 서로 다른 주의 시민 사이의, 또는 미국 시민과 외국인 내지 외국정부 사이의, 그리고 한 주의 시민과 다른 주 사이의 민사소송으로 청구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iv) 연방정부에 대한 세금반환 청구소송 등이다.

### (2) 연방항소법원

연방항소법원은 주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된 사건에 대해 심리하지만,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나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등 특정 행정기관이 낸 명령의 효력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전속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 (3)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은 9인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내의 최고 법해석기관으로서 행정, 입법행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 특별법원으로부터의 상소사건을 심리하는 것 외에 주 최고법원으로부터의 상소도 심리한다. 연방대법원은 이 밖에도

외국대사·공사·영사가 당사자인 소송, 둘 이상의 주 사이의 소송, 연방정부와 주 사이의 소송 및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제기한 소송의 제1심 법원으로서도 권한을 행사한다.

### 3) 형사배심제도

형사배심은 수정헌법 제6조에 의해 보장하고 있다. 형사재판은 기소로 시작된다. 기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자는 국선변호인의 요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게 된다. 증거개시의 절차와 재판 전의 타협 이후 죄상 인부(認否; arraignment) 절차가 취해진다. 이는 재판관이 범인을 불러 범죄를 인정할 것인가를 물어 피고가 무죄라고 답변하면 정식의 재판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강간 등 중죄사건인 경우 피고가 권리포기를 하지 않는 한 배심에 의한 재판이 행해진다. 유죄평결에 따라 어떤 형을 부과할 것인가는 재판관의 권한이다.

## 2. 변호사 선임(L산업)

첫째, L산업은 2000년 9월 25일자로 미국의 시애틀 소재 Garvey, Schubert & Barer 법무법인 소속의 Steve John 변호사를 선임하였다(사건 종결시까지 3만 5천US달러가 소요되었다).

둘째, L산업은 변호사 업무 및 제반 관련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애틀 소재 Alaska Trawl Fisheries, Inc.를 본 소송업무 대리점으로 선정하였다. 즉, i) 알래스카 한국명예영사(William Bittner)와의 협조, ii) 시애틀 한국 총영사관실과의 협조, iii) 더치하버에 계류 중인 'DIKO'호 방문지원, iv) 변호사가 요구하는 자료 지원 등을 실시했으며, 본 사건 종결시까지 2만 5천US달러가 대리점수수료로 지불되었다.

### 3. 미국 검찰의 조치(Robert C. Bundy 미국 검사 외 3인 의 검사보)

첫째, 'DIKO'호건 몰수증명요구<sup>28)</sup>(알래스카 지방법원, 2000년 9월 27일)

〈 몰수사유 〉

- (1) 본건은 해상권, 해양권과 관련되어 민사소송법 9(h)에 의한 피고 'DIKO'호 및 어구, 어획물, 장비, 부속품, 비품, 약 15톤의 어류 또는 그 가격 해당가치의 화물 몰수에 관한 것으로 미국 「맥너슨법」 특히, 16 U.S.C. 1857(1)(A)(D)(G), (2) (D)(2)(B)(4) 위반이다.
- (2) 본 법원은 「맥너슨법」 16 U.S.C. 1860(b), 1861(d).....등에 의하여 정당한 관할권을 가지며 본 법원의 위치도 적법하다.
- (3) 2000년 9월 23일 USCG C-130기가 미·러 경계선 부근 미국 수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발견하였다. 이 때의 위치는 북위 61° 18' 4, 서경 177° 44' 8로서 미국측 수역으로 약 600야드 위치였다. 이 어선은 한국선적의 'DIKO'호로 불법조업이 의심되어 정선을 명령하였으나, 러시아 수역으로 도주하였으며, 이 배는 예망 중이었다. C-130은 USCG 'Jarvis 725'호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러시아 수역에까지 추적을 실시하였다.
- (4) 'Jarvis 725'호에서 헬리콥터를 발진시켜 'Jarvis 725'호 도착시까지 시각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검색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DIKO'호는 계속 러시아 수역으로 도주하였다.
- (5) 2000년 9월 23일 'Jarvis 725'호가 계속 추적 중 러시아 경비정 「Askol Pynko」호가 도착하여 'DIKO'호가 정선되었으며, 미국측은 약 15톤의 어획물을 발견하였다.
- (6) 2000년 9월 24일 저녁 러시아측 요원은 떠나고 'Jarvis 725'호가 'DIKO'호를 러시아 수역으로부터 더치하버로 호송 중이다.

---

28) Case No. A00-290(JWS), 「Verified in Rem Complaint for Forfeiture」, 알래스카 지방법원.

- (7) 이 어선의 길이는 310피트의 트롤선이고 승선선원은 90명이며, 로이드 보험회사에 등록된 한국의 L산업 소속 어선이다.
- (8) 이 기소장에 기재된 모든 사항이 일어나는 동안 'DIKO'호는 미국 영해에 근접한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맥너슨법」 16 U.S.C. 1860(b), 1861(d)에 의거 이 법원이 재판권이 있으며, 그 외의 기간에는 러시아 수역에 있었다.
- (9) 이 기간 동안 'DIKO'호는 「맥너슨법」 16 U.S.C. 1824에 의한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조업허가를 취득하지 않았다.

< 기소이유 I >

- (10) 원고(미국정부)는 중재에 의거 상기 (1)~(9)항 사실을 다시 주장한다.
- (11) 2000년 9월 29일 이 배는 베링해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대략 북위 61° 18' 4, 서경 177° 44' 8 지점에서 조업을 했다.

< 기소이유 II >

- (12) 원고(미국정부)는 중재에 의거 상기 (1)~(11)항 사실을 다시 주장한다.
- (13) 2000년 9월 23일 이 배는 이 수역 조업허가도 없이, 어구를 격납하지 않고, 조업하여 「맥너슨법」 16 U.S.C. 1857(4)를 위반하였다.

< 기소이유 III >

- (14) 원고(미국정부)는 중재에 의거 상기 (1)~(13)항 사실을 다시 주장한다.
- (15) 2000년 9월 23일 이 배는 「맥너슨법」 16 U.S.C. 1857(1)(G)를 위반하여 불법 어획물을 선박 내에 보관하고 있었다.

< 기소이유 IV >

- (16) 원고(미국정부)는 중재에 의거 상기 (1)~(15)항 사실을 다시 주장한다.

- (17) 2000년 9월 23일 이 배는 「맥너슨법」 16 U.S.C. 1857(1)(d) 위반 여부 조사차 검색을 위한 USCG 요원의 승선을 거부했다.
- (18) 여기 위반에 따른 주장내용에 의하여, 그리고 「맥너슨법」 16 U.S.C.1860(a)(e)(i)에 의하여 법에 따라 임의로 처리키 위해 선박을 비롯한 15톤의 어획물 등 일체를 몰수한다. 그러므로 본 검사는 선박 또는 그 해당 가치물(어획물 전부를 포함한다)을 압류토록 영장 발부를 요구하며, 관련 인원들이 소환되어 심문에 응하기를 원하고, 이 물건 등을 매각하여 제반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둘째, 관리인 교체 지정에 대한 청원<sup>29)</sup>(알래스카 지방법원, 2000년 9월 27일)

법원 집행실(집달리)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미국정부)는 미국 수산청이 조속한 기일 내에 본 선박의 관리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한다(어구 등 장비 및 어획물 포함), 이 청원서는 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의 본 선박(어구 등 기타 포함)의 관리인 대리 지정에 관한 것에 한한다. 본 관리인 대리 지정이 이 기소와 관련 원고의 실질적인 이해에는 관계가 없다. 미국 수산청 역시 법원 서기의 체포영장 절차에 참여하였다.

셋째, 사실확인<sup>30)</sup>(알래스카 공증인 Brenda Birmingham, 2000년 9월 27일)

검사실 버클리(James Barkeley) 본인은 미국 검사보의 자격으로 NOAA와 USCG의 진술인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주장한 내용의 정보를 획득하였다. 따라서 그런 정보들로부터 본인은 이 주장들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술임을 믿고 본인은 이러한 경우 연방정부 기구가 아닌 미국검사가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옳다고 믿어 검사보인 나 자신이 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넷째, 구속영장<sup>31)</sup>(알래스카 지방법원 집행관, 2000년 9월 27일)

---

29) Case No. A00-290 CIV(JWS), *Petition on Shortened Time for Order Designating Substitute Custodian and Order*, 알래스카 지방법원.

30) *Verification*, Notary Public, 27. Sep., 2000.

31) Case No. A00-290 CN JWS, *In Rem Warrant of Arrest by Clerk of Court*, 알래스카 지방법원.

본 사건 ‘DIKO’호 및 기타 재산을 압류해 달라는 해상통제에 대한 민사상의 제소를 받았기 때문에 귀하는 해당 선박과 장비, 가구, 부속품, 재고품, 화물, 약 15톤의 어획물 또는 그 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을 별도 법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귀하의 책임 하에 압수할 것을 명령한다. 또한, 귀하는 피고의 재산이 압류된 지역 전반에 널리 배포되는 신문에 이를 게재하여 이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한다. 또한 선박가액 감정을 위하여 선박검사관이나 선박기관사의 승선을 허용해야 한다(해상통제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 c(6)).

다섯째, 구속영장 신속발부 촉구<sup>32)</sup>(알래스카 지방법원 행정처 서기, 2000년 9월 27일)

원고(미국정부)는 아래의 미 연방 민사소송법 해상통제권에 대한 보조규정 c(3)항에 의거 ‘DIKO’호에 대해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급하여 줄 것을 알래스카 지방법원 서기에게 요청하였다.

“연방법의 위반에 대한 민사 고소를 받으면 행정처(서기)는 그 선박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해 절박한 상황에 대한 증명서가 없더라도 즉시 소환장 및 체포영장을 발급해야 한다.”

여섯째, 홍보자료 배포(알래스카 지방검찰청, 2000년 10월 3일)

- (1) 한국어선 ‘DIKO’호가 9월 23일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USCG 소속 C-130 정찰기에 의하여 적발된 후 9월 27일 더치하버로 예인되었다.
- (2) 한국어선 ‘KK’호가 9월 25일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되어 30만US달러의 벌금과 16,315US달러의 부대경비를 납부하고 석방되었다.
- (3) 온두라스 어선 ‘Arctic Wind’호가 9월 6일 공해에서 유자망을 사용하여 2.5톤의 연어를 불법 어획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 (4) 러시아 어선 ‘Spitak’호가 7월 31일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여 불법 조업한 혐의로 18만US달러와 6천US달러의 부대경

32) Case No. A00-290 CIV(JWS), *Issuance of Warrant of Arrest by Clerk of Court*, 알래스카 지방법원.

비를 지불하고 9월 3일 석방되었다.

(5) 중국어선 'Mingchang'호가 8월 13일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150만US달러의 보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일곱째, 검찰 측 제의(알래스카 지방검찰청 Burdy 검사, 2000년 10월 4일 →변호사)

이 사건 해결 전망에 대하여 확인코자 한다. 150만US달러의 벌금으로 해결 또는 240만US달러의 보석금으로 선박의 석방을 제안함. 명태 파운드당 5~8센트 가격은 정확한 수치이다. 우리측이 조사한 결과 어선의 감정가는 350만US달러이며, 대체가치는 5천만US달러로 간주된다. 서류로 이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즉, 10월 9일까지 우리가 기소하고 10월 29일까지 회신을 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 귀 측(워싱턴주 변호사)이 알래스카 법정에 변호사로서 출정하겠다는 제의에 반대하지 않으며, 금일 USCG 항공기, 경비정 승무원들의 진술서를 FAX로 보내겠다. 소요경비는 내일 통보하겠다.

#### 4. L산업 변호사측 제의(James Barkeley 검사보 외 1명 의 특별검사보, 2000년 10월 6일)

첫째, 단순항해 부주의로 인한 위반

'DIKO'호 선장의 GPS 위치에 나타났듯이 이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중이었던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으며, USCG가 좌표를 재확인한 후에야 MBL을 월선한 것을 인지하였다. 그 이유는 'DIKO'호는 GPS에 도, 분 단위로만 표시하고, 초 단위까지는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관계로 MBL로부터 356~400야드 미국측 수역을 침범한 결과가 되었으며, USCG C-130기의 관측 보고에도 1차에는 550~600야드, C-130의 두 번째 보고는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하므로 'DIKO'호는 일관성 있게 항해부주의의 결과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DIKO'호는 미국 및 러시아측으로부터 상호 모순된 지침 수령 'DIKO'호가 USCG C-130기의 질문에 응신하지 않은 것과 승선을 거부

한 것은 러시아측 검사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선장은 GPS에 나타난 대로 러시아 수역 안에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관할권에 따라 행동했다.<sup>33)</sup> 따라서, 'DIKO'호는 USCG 'Jarvis 725'호로부터 도주하지 않았고, 러시아 경비정의 지시에 의거 행동했기 때문에 상호 모순된 지시에 의한 결과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 셋째, L산업측의 지시 이행기록

L산업의 미국 법령 이행기록 및 그 평판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L산업은 1972~1982년 간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한 바 있으며, 1988~1989년 간은 미국과 합작투자로 3척이 조업한 바 있다. 이후 1990년부터는 3척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였으며, 위에 언급한 기간 중에 미국법을 어긴 적이 없으며, 한국의 'KK'호 나포 이후에는 'DIKO'호 선장에게 MBL을 준수하도록 무선으로 주의를 환기한 바 있음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 넷째, 평가가격

'DIKO'호의 선가를 350만US달러로 추정한 것은 과대평가된 것으로 'DIKO'호는 선체길이가 165피트를 넘으므로 미국의 「맥너슨법」에 따라 미국수역 조업이 불가능한 쓸모가 없는 어선이며, 러시아 수역 어획 쿼터도 매년 감소되고 있어서 아무도 러시아 수역 조업을 위하여 'DIKO'호를 매입하려 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주기 바라며, L산업소속 'DT12'호(길이 220피트, 3,800마력, 1,500G/T)가 'DIKO'호보다 작은 규모이긴 하나, 25만US달러에 타사에 매도한 예가 있음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 다섯째, L산업측의 제의

순수한 항해상의 오류인바, 총 25만US달러에 부대경비를 더한 정도의 벌과금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추가로 미국의 단속요원이 한국에 출장하여 29척의 북양트롤 조업선을 대상으로 MBL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초청 여행경비는 부담코자 한다. 이를 수락시 150만 US달러의 보증금을 지불(어선 + 어획물)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10일 재협의코자 한다.

33) 러시아 연방 EEZ법 제12조 3항.

## 5. 합의(미 법무부 알래스카 지방검찰청 검사 vs. L산업 변호사, 2000년 10월 10일)

첫째, L산업측은 75만US달러의 벌금과 기타 부대경비로 19,124.38US달러의 지불에 동의한다.

둘째, USCG의 단속관계관 3명의 한국 방문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 6. 종결 합의서<sup>34)</sup>(알래스카 지방법원, 2000년 10월12일)

첫째, 권리주장자(L산업)는 75만US달러 및 19,124.38US달러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소재 마샬 구좌로 지불한다.

둘째, 고소인(미국정부)에게 지불할 75만US달러는 법적 재판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행정적으로 최종적이며, 전체적인 해결을 의미한다. 특히, 몰수에 관한 고소로 제기된 「맥너슨법」 16 U.S.C.§1857(2)(B), 16 U.S.C.§1857(1)(4), 16U.S.C.§1857(1)(G) 및 16 U.S.C.§1857(1)(D)의 위반조항에 기인한 고소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상기 19,124.38 US\$의 고소인에게 지불될 금액은 법원이 지정한 'DIKO'호의 대리관리자인 NMFS가 발생시킨 경비에 대한 보상이며,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총금액을 의미한다.

셋째, 본 종결합의서 내용 이행 즉시 상기 첫째항 피고선박 'DIKO'호에 대한 권리 주장자가 완전히 준수하는 즉시, 법원의 명령에 따라 미국의 감호로부터 석방되어야 하며, 나포 당시 승선 중이던 모든 선원들과 함께 더치하버를 출항할 수 있다.

---

34) 미연방절차법규정 41(a)(1), Case No. A00-290 Civil (JW), *Stipulated Settlement Agreement*, 알래스카 지방법원.

## 7. 지불통지서<sup>35)</sup>(알래스카 지방검찰청 Bundy 검사 외 3인의 검사보, 2000년 10월 12일)

알래스카 지방법원의 통고에 따라 L산업측이 종결합의서상의 지불을 완료하면, 선박, 어구, 가구, 장신구, 화물 등은 석방한다.

## 8. 명령<sup>36)</sup>(알래스카 지방법원 판사, 2000년 10월 12일)

본 사건에 대한 쌍방의 조정안을 검토 후 수락하고 이에 명령한다.  
첫째, 쌍방의 종결합의서를 승인한다.

둘째, 쌍방은 각각 자신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셋째, 법원은 종결 합의서를 승인했고 지불금이 전액 종결합의서 조건대로 처리되었음을 미국정부(알래스카 지방검찰청)로부터 통보 받으면 이에 따라 피고 선박 'DIKO'호와 그 어구, 가구, 장신구, 냉동고, 화물이 NMFS의 감호로부터 석방되도록 지시한다.

넷째, 본 조치는 피고의 반소(반대 클레임)를 포함하여 영구히 취하된다.

## 9. 출항

압류된 제반서류 인수 후 2000년 10월 15일 더치하버를 출항하였다.

## 10. 한국정부의 조치사항(해양수산부)

첫째, 수산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sup>37)</sup>

---

35) CASE No. A00-290 CIVIL(JWS). *Notice of Payment*, 알래스카 지방법원.

36) Case No. A00-0290-CV(JWS), *ORDER*, 알래스카 지방법원.

37) 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원양 53100-721, 2000.10.25).

2000년 10월 25일 L산업 및 'DIKO'호 선장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발부 되었으며, 2000년 11월 5일 수산업법 제34조(공익상 필요한 의한 면허어업 제한 등)에 의거 외국의 영해 또는 어업 전반 수역을 침범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였다.

둘째, 행정처분 명령<sup>38)</sup>

'DIKO'호는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였으므로 어업정지 30일을 명령하였다. 단, 'DIKO'호는 미국에 16일 간 억류된 바 있어 그 기간을 경감하고, 또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처분 기준일수의 1/2을 경감 적용하여 처분을 면제한다. 다만, 선장은 해기사 면허정지 30일을 명한다.

## IV. 주요 쟁점

### 1. 경계수역(Maritime Boundary Line : MBL)

경계수역은 1990년 1월 6일 베링 해 해상공간의 분할선에 관한 미·소 협정에 따라 결정된 선(U.S-Russia Convention Line)을 말한다. 기존 베링 해 조업수역의 동측 경계선(러시아측)은 이 경계수역 5해리 이원으로 정해졌다. 당초 북서 베링 해 조업수역은, 1996년 12월 10일 제1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는 동측 조업수역이 러시아 경제수역의 경계선으로 명시되었으나, 1997년 1월 16일 제6차 한·러 어업 의정서 이행을 위한 합의서에서 “베링 해 해상공간의 분할선에 관한 미·소 협정에 따라 결정된 선의 2해리 밖에서 조업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추가 명시되었다. 한국측은 러시아측의 이 같은 조업 제한에 대해 그 동안 1990년 1월 6일자 미·소 협정(이하 분할선 협정)이 소련측의 미서명으로 발효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경계선 내측 조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조업

38)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원양 53100-777, 2000.11.20).

수역 제한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다 제7차 한·러 어업위원회 회의 의정서 이행에 관한 합의서(1997년 12월 24일)에서 분할선 2해리 밖에서 조업할 의무를 지닌다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측은 1998년 6월 8일 농업식량부 수산국이 러·미 간 해양경계선으로부터 5해리 이내 수역에서 모든 어로 활동을 금지한다는 전문을 한국정부에 타전하여 왔으나, 한국측은 이의 철회는 물론 1.5해리 이원으로 조업구역을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 결과 1999년 7월 러시아측은 연해주 사할린 캄차카 지역 어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자국 어선들에 대해서는 조업수역을 기존 5해리 이원에서 1.5해리 이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2000년 4월 러시아는 아래와 같이 한국어선들에 대하여도 1.5해리까지 조업수역을 완화한다는 외교 양해 각서를 보내왔다.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생물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베링 해 해상공간의 분할선에 관한 미·소 협정(소련을 러시아가 승계)에 따라 설정된 러시아 서북 국경선에서 1.5해리까지의 수역에서 조업선들의 다음과 같은 어로활동을 일체 금지시킨다.

- “A. 수산생물자원의 조업, 채취 혹은 생물자원을 손상시킬 기타 어로 활동을 금지시킨다.  
 B. A항이 금지하는 활동을 준비하거나 직접 초래할 그러한 임의의 활동을 금지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자국 어선이나 외국 어선 공히 분할경계선의 1.5해리 밖의 러시아 수역에서만 어업활동을 하도록 하여, 분할경계선을 월선하여 미국수역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러시아 정부는 대처해 왔다. 그러나 2000년 9월 6일에도 한국의 G산업 소속 북양트롤선 KK호(1천톤급)가 러시아 수역 조업 중 분할경계선을 침범함으로써 USCG에 나포된 사건<sup>39)</sup>이 있었으며, 이어서 2000년 9월 23일 DIKO호가 경계선을 침범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2001년 11월 11일에도 J수산 소속 북양트롤선 77호(1300톤급)가 분할

39) Case No. AOO-267(JWS), 알래스카 지방법원.

경계선을 침범하여 USCG에 나포되는 사건<sup>40)</sup>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빈번한 분할경계선 침범은 고의가 아니라는 점이 재판과정에서 피고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분할 경계선과의 1.5해리는 해상에서는 아주 근접한 거리에 불과하여 GPS 체계로 측정 시 세심한 단위까지를 배려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으나, 사실은 러시아 수역보다는 미국 수역이 자원관리가 철저하여 자원이 풍부하다는 이유 때문에 빈번한 경계선 침범사건이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 하에서 DIKO호도 러시아측 조업 허용선으로부터는 1.8해리를 벗어난 결과이고, 분할경계선 미국측으로부터는 0.3해리 침범한 결과가 되었다.

## 2. 추적권(right of hot pursuit)

추적권(right of hot pursuit)이란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국내법령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경우 연안국의 군함이나 군용항공기가 범법선박을 공해까지 계속 추적하여 심문, 나포한 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권리이다.<sup>41)</sup>

추적권은 외국적 선박이 자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good reason)가 있는 경우에 행사될 수 있다.<sup>42)</sup> 여기에 언급된 충분한 이유의 해석범위와 범법행위의 종류 및 위반의 정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유엔해양법협약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추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연안국의 국가안보, 관세법, 출입국 관리법, 어업관련법령, 환경범죄 등과 같이 연안국의 주권 및 관할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본다. 그러므로 사소한 통항규칙의 위반, 보고의무의 위반, 선박서류의 불비 또는 출입항 절차의 위반과 같은 경미한 위반은 추적권 발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sup>43)</sup> 연

40) Case No. A01-0340 CV(HRH), 알래스카 지방법원.

41) 박춘호·유병화, 「해양법」, 민음사, 1986, p.121.

42)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 1항.

43) 최종화, 「현대 국제해양법 협약」, 세종출판사, 2000, p.167.

안국에 의한 추적권은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자선 중의 하나가 추적국의 내수, 군도수역, 영해, 접속수역, 경계수역 또는 대륙붕 상부수역 내에 있을 때부터 개시되어야 한다.<sup>44)</sup> 더욱이 오늘날 추적권의 적용범위는 연안국의 관할권에 종속되는 모든 해역으로 확대되었다. 즉,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은 물론 해양구조물 주변의 안전구역에서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거기에서 추적을 개시할 수 있다.<sup>45)</sup>

위반선박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 중이고 모선은 공해상에 있지만 자선이 연안국 관할수역 내에서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추적 대상이 된 경우 구조적 존재원칙(doctrine of constructive presence)에 근거하여 모선도 추적의 대상이 된다. 또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원의 공해에서 선단을 이루어 어업활동을 하는 어선의 자선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침입하여 불법어업을 행할 경우 그 모선도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추적선이 된다.<sup>46)</sup> 추적의 개시에 있어서는 추적선이 “이용 가능한 실질적인 수단(practicable means as may be available)”에 의하여 피추적선의 위치가 연안국의 관할영역 내임을 확인하고, 또한 피추적선이 인지할수 있는 거리에서 시각적(visual), 청각적(auditory) 정선신호를 발신한 후 그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공해로 도주하는 경우에 추적은 개시될 수 있다.<sup>47)</sup> 이때 추적선이나 추적항공기의 위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추적의 두 가지 개시요건은 피추적선의 위치와 정선신호에 관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다. “이용 가능한 실질적 수단”이라 함은 피추적선의 위치를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재래식의 선위측정장치는 물론이고 레이더나 GPS와 같은 현대식 항법장치들을 총칭한다. 그리고 추적개시 요건으로서의 유효한 시각적 정선신호의 방법에는 발광신호, 수기신호, 국제신호로서의 기류신호(旗類信號) 등이 있고 청각적 정선신호의 방법에는 기적, 사이렌, 확성기 등에 의한 음향신호가 있는데, 이들 신호는 반드시 피추적선이 인지할 수 있는 근거리에서 행

44)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 제1항 및 2항.

45) 山本草二, 「海洋法」, 도서출판 지산, 2002, p.310.

46) 최종화, *Op. cit.*, p.167.

47)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 4항.

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정선신호의 수단으로서 시각적·청각적인 사항만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무선통신에 의한 정선명령을 배제함으로써 추적권의 남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sup>48)</sup>

추적의 시간적, 공간적 길이에 대한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추적선이 자국이나 제3국의 영해에 진입함으로써 추적권은 소멸된다.<sup>49)</sup> 따라서 피추적선의 선적국 또는 제3국의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상부수역에 진입한 경우에는 추적권이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sup>50)</sup>

따라서 USCG의 정찰기 및 경비정 Jarvis호에 의한 DIKO호의 추적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추적 개시 요건으로서 유효한 시각 또는 청각에 의한 정선 신호를 발하였으며 정찰기와 경비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중단없이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추적하였고, 연안국은 추적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추적선박에 대한 승선, 임검, 나포 및 항구로의 예인 등과 같은 강제조치도 추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실력 행사도 허용되는 만큼<sup>51)</sup> 이번 사건 대응은 적법한 추적권 행사로 판단되어 DIKO호측에 의하여 논쟁이 제기된 바 없다.

### 3. 선박·선원의 신속한 석방

어느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보석금이나 그 밖의 금융보증에 예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억류국이 선박이나 선원을 신속히 석방해야 할 협약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되는 경우, 당사국 간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억류로부터의 석방문제는 당사국 간 합의된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으며, 만일 그러한 합의가 억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협약 제287조에 따라 억류국이 수락한 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

48) 최종화, *Op. cit.*, p.68.

49)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 3항.

50) 최종화, *Op. cit.*, p.169.

51) *ibid.*

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sup>52)</sup> 또한 석방신청은 선박의 선적국에 의하여 또는 선적국을 대리하여서만 할 수 있다.<sup>53)</sup> 이와 관련, 재판소는 지체없이 석방신청을 처리하고, 선박과 그 소유자 또는 선원에 대한 적절한 국내 법정에서의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석방문제만을 처리한다. 억류국 당국은 선박이나 승무원을 언제라도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sup>54)</sup> 특히, 재판소가 결정한 보석금이나 그 밖의 금융보증이 예치되는 즉시 억류국은 선박이나 선원들의 석방에 관한 재판소의 결정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sup>55)</sup>

이와 관련, 이번 DIKO호 사건은 2000년 9월 27일에 더치하버로 예인된 후 2000년 10월 12일에 사건이 종결되어 억류기간이 16일 간이었으나, 선박·선원의 석방지연을 이유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부탁한 일이 없었다. 이는 미국 NMFS 감호기간 중에도 L산업관계자, 변호사 및 대리점으로 하여금 선박·선원 방문을 자유롭게 허용하여 자료 수집 및 필요한 물품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미정부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 V. 결 론

유엔해양법협약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에 대하여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배타적인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각 어종에 대해 ‘총허용 어획량’을 결정함에 있어 생물자원이 남획으로 인하여 고갈되지 않도록 최대 지속적 생산량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보전과 관리를 취할 의무도 지우고 있다. 이러한 보존의무는 영해 또는 과거 12해리 어업수역 제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는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를 인정하는 것

52) 유엔해양법협약 제292조 1항.

53) 유엔해양법협약 제292조 2항.

54) 유엔해양법협약 제292조 3항.

55) 유엔해양법협약 제292조 4항.

에 대한 보상으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가해진 하나의 제한이다. 그러나, '충허용어획량'의 결정 그 자체가 연안국의 권능 또는 재량으로 되어 있는 이상, 이러한 제요인을 고려한 후 보존, 관리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연안국의 판단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그 판단의 옳고 그름을 둘러싸고 타국과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중재 재판 또는 사법재판과 같은 유엔해양법 협약이 규정하는 강제적 해결 절차보다는 강제조정예 회부되는 것에 그치고, 더욱이 이 조정위원회의 보고에는 구속력이 없다.<sup>56)</sup> 그러므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어업규제에 관해서는 연안국이 전속적인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국제법 상으로도 더욱이 그 합법·위법성을 논쟁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

특히, 연안국 관할 법원에서의 다툼과 이의 판결에 불복하여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중재재판을 부탁할 경우 막대한 법률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진 한국의 수산회사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안국 관할 법원에 의한 일방적이고 불리한 판결내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미국의 재판제도가 원고(검찰)와 피고(변호사) 간의 합의, 즉 재판 전의 타협을 통한 조정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이를 피고측(관련회사)이 거부한다면 과도한 보석금의 산정과 선박·선원의 석방 지연 등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검찰 당국의 무리한 요구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여 허가 없이 어업활동을 한 DIKO호 사건을 통하여 미국의 재판 절차를 고찰해 봄으로써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는 러시아 수역 조업 북양트롤업계(합작회사 포함)가 충분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국을 위시한 연안국들의 국내법정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와 소송상의 특징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이의 선행연구가 미흡한 만큼 어업분쟁 해결에 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재판에 소요되는 막대한 소송

56) 유엔해양법협약 제297조 3항.

비용으로 인하여 재판에 이기고도 당해 업체가 도산하는 경우가 없도록 어업분쟁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담당할 수 있는 법률구조기금의 설립이 시급한 과제이다.

## 참고문헌

1. 박춘호·유병화, 「해양법」, 민음사, 1986.
2. 외교통상부, 「유엔해양법 협약」, 1996.
3. 이석용 외, 「국제어업협약 체계적 정리연구」, 해양수산부, 2002.
4. \_\_\_\_\_, 「국제어업협약집」, 해양수산부, 2002.
5. 최종화, 「국제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2002.
6. \_\_\_\_\_, 「현대국제해양법」, 세종출판사, 2000.
7. 해양수산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2002.
8. \_\_\_\_\_, 「수산업법」, 2002.
9. 山本草二, 「海洋法」, 지산, 2002.
10. 외교통상부, 「Agreement between the Governing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in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Fisheries off the Coas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26 July, 1982.
11. \_\_\_\_\_,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ooperation Fisheries」, Washington D.C., 24 Nov. 1972.
12. \_\_\_\_\_,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viet Socialist Republics Concerning Cooperation in Fisheries」, Moscow, 10 Sep. 1991.
13. \_\_\_\_\_,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Fisheries off the Coas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4 Jan. 1977.
14.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Maritime Boundary*, Washington D.C., June 1990.
15. *Statement Concerning Hot Pursuit of the Korean Flagged Fishing Vessel DIKO*, USCG, 28 Sept., 2000.

16. *Statement Concerning the Korea Flagged Fishing Vessel DIKO*, USCG, 28 Sept. 2002.
17. *Statement of Mitchell T. Gross*, CICWS, 28 Oct. 2000.
18. *Statement of AMT3 Michael Knauer, Aircrew of CG1707, Regarding the FF/V DIKO fishing inside the U.S. Exclusive Economic Zone*, AMT, 23 Sept. 2000.
19. *Statement of Lt. Ricky Skarpe, Observer One CG1707, regarding the FF/V DIKO Fishing inside the U.S. Exclusive Economic Zone*, ICB, USCG, 23 Sept. 2000.
20. *Statement of AVTI Mark Foblano, Navigator of CG1707, regarding the FF/V DIKO Fishing inside the U.S. Exclusive Economic Zone*, CGNR, 23 Sept. 2000.
21. *Statement of Lt. Craig Breitung , Copilot of CG1707 regarding the FF/V DIKO Fishing inside the U.S. Exclusive Economic Zone*, USCG, 23 Sept. 2000.
22. *Statement of Lt. Carey Hixson, Aircraft Commander of CF1707 regarding the FF/V DIKO Fishing inside the U.S. Exclusive Economic Zone*, 23 Sept. 2000.
23. *Statement regarding Boarding of South Korea Flagged Fishing Vessel*, USCG, 23 Sept. 2000.
24. *Verified In Rem Complaint For Forfeiture*, Case No. A00-290Civ (JWS), District Court of Alaska.
25. *Petition on Shortened Time for Order Designating Substitute Custodian and Order*, Case No. A00-290 CIV(JWS), District Court of Alaska.
26. *Verification*, Notary Public, 27 Sept. 2000.
27. *In Rem Warrant of Arrest by Clerk of Court*, Case No. A00-290 CIV(JWS), District Court of Alaska.
28. *Issuance of Warrant of Arrest by Clerk of Court*, Case No. A00-290 CIV(JWS), District Court of Alaska, 27 Sept. 2000.
29. *Stipulated Settlement Agreement*, Case No. A00-290 CIV(JWS),

District Court of Alaska, 12 Oct. 2000.

30. *Notice of Payment*, Case No. A00-290 CIVIL(JWS), District Court of Alaska, 12 Oct. 2000.

31. *ORDER*, Case No. A00-290 CV(JWS), District Court of Alaska 12 Oct. 2000.